

「2025 대한민국 열린 토론회」 논제 참고자료

논 제	국민연금 의무가입을 폐지하여야 한다.
배 경	•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. (「국민연금법」 제6조) • 「국민연금법」 일부개정(2025. 4. 2.)으로 2026. 1. 1.부터 보험료율 인상 ※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-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험료율을 현행 9%에서 13%로 인상하고, - 2025년 기준 41.5%인 명목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매년 0.5%p씩 하향하여 40%가 되도록 하려는 현행 인하계획을 중단하면서 명목소득대체율을 43%로 인상하며, -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가가 국민연금급여의 지급을 보장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,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인 군복무와 출산에 대한 보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으로 추가 산입되는 가입기간을 늘리는 등 보장성을 강화하며, -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하여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함. • 개인의 자유와 투자 선택권 보장, 저출산·고령화 추세에 따른 수익률 불만 및 미래 연금지급 가능성에 대한 불안 등 제도 불신, 소득이 불안정한 계층에 대한 납부 부담을 고려하여 의무가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과 • 노후 보장 및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, 세대 간 부양 책임 완화, 지속적 가입자수 유지를 통한 재정 안정성 확보, 국민연금제도 지속성을 고려하여 의무가입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음.